채무조정 요청서

□ 신청인 기본사항

| 성명 | 생년월일 | 연락처 | 주소 | | | | | |
|----|------|-----|----|--|--|--|--|--|
| | | | | | | | | |

□ 채무조정 요청대상

| 채권금융회사 | 계좌번호 | 대출일자 | 잔액(원) | | | |
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|--|--|
| | | | | | | |

□ 채무조정 요청사유

| 실직 | 폐업 | 질병 및 사고 | 소득 감소 | | | | | |
|----|----|---------|-------|--|--|--|--|--|
| | | | | | | | | |
| 기타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
□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

■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- ◇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(이하"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 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- ◇ 개인채무자보호법 │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.
- 1.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2.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
- 3.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- ◇ 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1.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2.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3.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- ☆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,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.

- ◇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◇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.
- ◇ 본 채권금융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상담을 권해드립니다.
- ◇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1.채무조정요청서 2.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
- 3.채무조정안 4.변제능력 입증자료
- ※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, 상기 서류외에 심사중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※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☎02-567-1945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본인은 | 상기 | 항목의 | 내용 | 을 人 | 실 | 대로 | 기재하였 | 친고, | 채무조정 | 요청 | 에 | 따른 | 안내 |
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---|----|------|-----|------|----|----|-----|----|
| 사항을 | 숙지 | 하였습니 | 1다. | 이에 | 귀 | 사의 | 규정에 | 따라 | 상기와 | 같이 | 채! | 무조정 | 을 |
| 유청한 | LIC | | | | | | | | | | | | |

년 월 일

신청인 본인: (인)